

RESEARCH ARTICLE

Requirements for Copyright Protection of Applied Ar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U,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Kyungsuk Kim

Professor,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Sangmyu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Kyungsuk Kim \(miju0704@smu.ac.kr\)](mailto:Kyungsuk Kim (miju0704@smu.ac.kr))

ABSTRACT

Applied art refers to designs that combine artistic expression with utilitarian function, and it falls within a gray area between copyright law and design law because it simultaneously incorporates functional and aesthetic elements. In the current environment, with the global dissemination of product designs, questions concerning copyright protection of applied art and the coexistence of copyright and design rights have become significant legal issues. In particular, legislative approaches and judicial decisions across jurisdictions reveal divergent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pyrightability of applied ar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in *Mio/Konektra*, delivered on December 4, 2025, reaffirmed the EU's established case law that originality constitutes the sole criterion for assessing the copyrightability of applied art. This ruling has renewed scholarly and practical debates concerning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applied art. Moreover, cases decided in the same year by German and Dutch courts—which reached conflicting conclusions with respect to the same applied art object—demonstrate that uncertainty persists within the EU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is standard.

Taking the *Mio/Konektra* judgment as its point of departure, this article undert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copyright protection for applied art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It identifies and contrasts the normative models adopted in each jurisdiction: the EU's originality-based single-criterion approach; the separability-focused framework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Japan's requirement of a high degree of aesthetic creativity.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paper further examines the current position of and challenges facing Korea's applied art copyright protection system.

Open Access

Received: May 07, 2026
Revised: May 16, 2026
Accepted: September 04, 2026
Published: September 30, 2026

Funding: The author received manuscript fees for this article from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2026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KEYWORDS

applied art, design, utilitarian function, separability, high aesthetic creativity

원저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 EU·미국·일본·한국의 비교법적 검토

김경숙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교신저자: 김경숙 (miju0704@smu.ac.kr)

차례

1. 서론
2.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이론적 전제
 - 2.1. 응용미술의 특성
 - 2.2.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여부 및 방법
 - 2.3. 조약상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3. 주요국·지역별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
 - 3.1. EU
 - 3.2. 미국
 - 3.3. 일본
 - 3.4. 한국
4.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의 비교법적 분석
 - 4.1. 비교분석을 위한 관점
 - 4.2. 기능성과 표현의 경계 설정 방식
 - 4.3. 저작물 개념의 설정
 - 4.4.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관계
5. 결어: 한국에의 시사점

국문초록

응용미술(applied art)은 실용적 기능을 가진 물품에 예술적 표현이 결합된 디자인을 의미하며, 기능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경계 영역에 위치한다. 오늘날 제품 디자인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환경에서, 응용미술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권과 저작권이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는 상이한 접근 방식을 보여 왔다.

2025년 12월 4일 선고된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Mio/Konektra 판결은,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에 있어 독창성(originality)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EU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응용미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에 관한 논의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같은 해 독일과 네덜란드 법원이 동일한 응용미술 대상에 대하여 상반된 판단을 내린 사례는, EU 내부에서도 응용미술 보호 기준의 적용에 혼선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에 본 논문은 Mio/Konektra 판결을 계기로, EU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응용미술 저작권 보호 법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EU의 독창성 단일 기준 모델, 미국과 한국의 분리가능성 중심 모델, 일본의 고도의 미적 창작성 요구라는 각국 규범 모델의 특징과 차이를 규명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응용미술 저작권 보호 체계의 현 위치를 점검한다.

주제어

응용미술, 디자인, 실용물품, 분리가능성, 고도의 미적창작성

1. 서론

응용미술(applied art)이란 실용적 목적을 가진 물품(예: 의류, 가구, 산업디자인, 포장, 제품 형태 등)에 예술적 표현이 결합된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자인은 순수미술(fine art)과 달리 실용성을 띠지만, 창작적·예술적 요소가 인정될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될 여지도 있다.

디자인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기능적 형상에 그치지 않고 창작자의 미적 표현이 구현된 물품이 상품화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물품에 응용미술이 구현되고 그 물품이 상품으로서 유통되는 경우, 해당 응용미술이 디자인권으로 보호되는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또는 양 권리 모두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디자인법은 물품의 외관을 중심으로 산업적·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보호를 제공해 온 반면, 저작권법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 왔다. 응용미술은 그 성질상 기능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지, 또는 양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가능한지는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응용미술을 포함할 것인가)는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가 문제된 바이어켄슈탁(Birkenstock) 샌들 사건에서 2025년 2월 독일 연방대법원¹⁾은 저작권 보호를 부정한 반면, 같은 해 11월 네덜란드 법원²⁾은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는 상반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동일한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에 대하여 유럽 내부에서도 상이한 판단이 내려지는 상황은, EU 법체계 하에서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 또는 저작물성 판단기준이 과연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25년 12월 4일,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Mio/Konektra 판결³⁾에서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에 관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즉, 유럽사법재판소는 응용미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저작물보다 엄격한 독창성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특정 디자인이 저작물성 요건인 독창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보호가 병존하는 중첩적 보호(cumulation)가 허용된다고 판시한 것이다(후술). 이 판결은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은 ‘실용물품(useful articles)’에 대하여 그 미적 요소가 물품의 실용적 기능과 ‘분리가능(separable)’할 때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17 U.S.C. §101). 그러나 ‘분리가능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반드시 물리적인 분리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관념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몇 차례 변천을 거듭하였고 최근에는 관념적 분리가능성만으로도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후술). 또한 일본의 경우 실용물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서 문예·학술·미술·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론이 일반적인 반면, 판례는

1) Bundesgerichtshof (BGH), Urteil vom 20. Februar 2025 - I ZR 16/24, Birkenstock-Sandalen (kein Werk der angewandten Kunst nach § 2 Abs. 1 Nr. 4 UrhG).

2) Rechtbank Midden-Nederland, 12 November 2025, ECLI:NL:RBMNE:2025:5837 - Birkenstock v Scapino (auteursrechtelijke bescherming van de sandalen Madrid, Arizona, Florida).

3) Joined Cases C-580/23 and C-795/23, *Mio/Konektra*, Judgment of 4 December 2025 (CJEU) 사건의 내용은 두 가구 제조업체인 Asplund와 USM은 가구 유통업체가 자사의 특정 가구 제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스웨덴과 독일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스베아 항소법원(C-580/23, Mio AB v. Asplund)과 독일 연방대법원(C-795/23, USM v. Konektra)은 유럽연합 기능조약(TFEU) 제267조에 근거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예비판결을 요청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2025년 12월 4일 판결을 선고하였다(김경숙, “CJEU, Mio/Konektra 판결에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요건 판단: C-580/23 및 C-795/23”, 저작권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1-8면).

실용적 기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미술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도의 미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저작물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개해오고 있는데, 이는 말하자면 디자인권과의 역할분담을 강조하거나 저작권보호에는 소극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후술).

이와 같이 주요국·지역에서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일본 저작권법의 해석론에 입각한 판례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응용미술이 미술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법조문에 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데(제2조 제15호), 이는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에 관하여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의 영향을 받아 조문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디자인은 국제적 유통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지니는바, 해외의 법제와 판례들은 국내 법제와 실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에서 생산된 응용미술 적용 물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의 보호 기준에 따른 지재권 판단은 기업의 권리 보호 전략과 분쟁 대응에 실질적인 함의를 가진다. 이에 본 논문은 주요국·지역으로서 EU·미국·일본의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법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보호 범위와 판단 기준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개정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에 관한 해석론의 방향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이론적 전제로서 응용미술의 특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외에 저작권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론을 검토함으로써, 각국의 보호 체계가 상이하게 형성된 배경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EU,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의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에 관한 법제와 판례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각국에서의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에 관한 태도를 수평적·횡단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제3장의 검토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각국 법제와 법리의 특징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의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에 관한 해석론의 방향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2.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이론적 전제

2.1. 응용미술의 특성

응용미술은 실용물품, 특히 대량생산되는 물품을 장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용성과 무관하게 오로지 미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미술(fine art)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제품의 형태나 외관에 포함된 기능적 요소는 일반적으로 그 제품의 기술적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미적 관심에 부응하는 제품의 형태나 외관상의 특징은 디자이너의 개성, 취향, 스타일이 표현된다는 점에서 순수미술 작품과 유사한 측면을 지닌다. 이와 같이 심미적 목적과 기능적 목적이 결합된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디자인 또는 응용미술은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보호 영역이 교차하는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때문에 미술저작물과 디자인 간의 관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이란 물품 외관에 관한 미적 창작을 의미하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물품에 적용되어 공업상 이용될 수 있을 것이 등록요건으로 요구된다.⁴⁾ 미술저작물 역시 미적 창작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그것이

4) 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특허법원 2008. 10. 8. 선고 2008허8419 판결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공업적 생산과정을 거쳐 동일 형태와 모양의 물품을 반복 생산 즉 양산할 수 있는 개연성을 의미한다); 김종균, “디자인심사관행과 열린디자인심사”, 『지식재산연구』, 제20권 제4호(2025), 115면.

대량생산품에 이용되는 경우 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조각은 미술저작물이지만 이를 대량생산되는 장식물의 외관으로 구현할 경우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고, 회화 역시 포스터나 캘린더와 같은 대량생산품의 외관으로 이용되는 경우 디자인으로서 보호될 수 있다. 반대로,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은 대량생산품의 신규 디자인 역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평가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다.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의 문제는 이미 저작물성을 갖춘 미술작품이 실용물품에 응용되는 경우와 달리, 실용물품에 구현된 표현을 저작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 경우는 별도의 저작물성 판단이 요구된다.

2.2.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여부 및 방법

이와 같이 응용미술은 기능적 요소와 미적 요소가 결합된 창작물이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외에 저작권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다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⁵⁾

2.2.1. 중첩적 보호(Cumulative Protection) 부정론

이 접근법에 따르면 디자인과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 제도는 엄격히 구별하여, 실용물품의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에 관한 특별한 보호 제도에 의해서만 보호되며,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예술작품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 디자인은 그 자체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는, 디자인권이 다른 사람들이 디자인을 개량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상 보호해주는 권리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디자인은 일정한 창작의 진보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통해 공시되며, 비교적 단기간의 보호만이 부여된다. 반면 저작권은 다른 사람들이 개량 발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문화적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하므로, 창작자의 개성이 표현된 경우라면 등록이나 공시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장기간에 걸친 보호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디자인법은 신규성·진보성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 보호기간도 출원일로부터 20년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에 비해 현저히 짧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디자인법의 적용 대상인 ‘산업디자인’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할 수 없으며, 양 제도의 중첩 적용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2.2. 중첩적 보호(Cumulative Protection) 긍정론

이 접근법은 저작권 제도와 산업디자인 보호 제도가 서로 독립적으로 병존하면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되는 보호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 경우 산업디자인은 각 제도가 요구하는 요건과 규범을 충족하는 한, 두 제도 모두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디자인은 예술작품 또는 응용미술작품으로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디자인법에 따라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⁶⁾

5) WIPO, “Industrial Designs and Their Relation with Works of Applied Art and Three-Dimensional Marks (SCT/9/6)”, WIPO, 2002, p. 10.

이러한 중첩적 보호는 프랑스의 예술의 통일성 이론(l'unité de l'art)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⁷⁾ 이 이론에 따르면 예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그 표현 방식이나 구현 대상에 따라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특정 작품이 창작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면 예술작품으로서 보호받을 자격을 가지며, 예술적 표현이 단지 실용물품에 구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술적 지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⁸⁾

중첩적 보호 체계하에서는 산업디자인 역시 다른 예술작품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창작 시점 또는 유형적 형태로 고정된 시점부터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 동시에 동일한 디자인은 디자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디자인의 등록일 또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관련 제품의 최초 상업적 유통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중첩적 보호 구조는 종종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비선점 조항(non-preemption clause)을 두는 방식으로 제도화된다.⁹⁾ 이러한 조항은 산업디자인 또는 응용미술 작품에 대한 보호가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선점하거나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어느 하나의 법률이 원칙이 되고 다른 법률이 예외로 작동하는 구조가 아님을 의미한다.¹⁰⁾

2.2.3. 조건부 보호론

이 입장은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그 보호가 디자인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¹¹⁾

그 결과, 실용적·산업적·소비재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나 구성은 그 미적 가치나 완성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이러한 추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 즉 제품의 형태나 구성 요소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이 구현된 제품의 기능적 측면으로부터 식별 가능하게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거나, 독립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¹²⁾ 다시 말해, 관찰자가 개념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실용물품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6) Ibid., p. 10.

7)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은 112조의1에서 “이 법전의 규정은 모든 정신적 저작물에 관해서 그 종류, 표현형식, 가치 또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12조의2 제10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동조 제14호에서 ‘복식 및 장식의 계절산업의 창작물’을 정신적 저작물로서 서적, 음악, 영화와 똑같이 같은 서열로 나란히 보호하고 있다.

8) André Lucas, *Traité de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5e éd., LexisNexis, 2017, p. 96.

9) WIPO, “Model Law for Developing Countries on Industrial Designs (Publication No. 808(E))”, WIPO, 1970, p. 15, Section 1(2).

10) 이와 같은 규정은 디자인법과 저작권법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서는, 예컨대 유럽 디자인지침(제16조 및 제17조), 유럽 디자인규정(제96조), OAPI 협정(OAPI Agreement) 부속서 IV 제1조 제3항, 그리고 코스타리카(제23조 제3항), 도미니카공화국(제54조 제2항), 엘살바도르(제124조), 과테말라(제148조), 파나마(제67조), 스리랑카(제25조), 우루과이(제87조)의 디자인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파라과이(제3조 제3항), 스페인(제3조), 미국(미국연방법전 제17편 제301조 (d))의 저작권법이 그 예에 해당한다(WIPO, supra note 5, p. 11, footnote 22 재인용).

11) WIPO, supra note 5, p. 10.

12) 예컨대,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회화·그래픽·조각 저작물(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의 정의)은, 실용물품(usable article)의 디자인에 대하여, ‘해당 디자인이 물품의 실용적 측면으로부터 분리하여 식별될 수 있고, 또한 그 실용적 측면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표현적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저작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탈리아 저작권법(1941년 4월 22일 법률 제633호, 1997년 5월 26일 법률명령 제154호에 의해 개정됨) 제2조 제4호는, ‘조각, 회화, 소묘, 판화 및 이와 유사한 조형미술 저작물은, 실용 산업제품에 적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가 해당 제품의 산업적 성격과 구별되는 경우에는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이른바 ‘분리가능성 원칙(dissociation, scindibilità)’로 불린다(WIPO, supra note 5, p. 11, footnote 25 재인용).

이와 같은 조건부 보호론의 이론적 근거는 기능적·기술적 창작물이 디자인법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우회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저작권 제도가 본래 보호 대상으로 삼는 문화적·예술적 창작물과 산업기술적 창작물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다.¹³⁾

2.3. 조약상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에 관해서는 서로 상이한 세 가지 접근 태도 내지 입장이 존재하며, 각 국가는 자국의 법체계에 따라 그중 어느 태도를 취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은 국제조약을 통해 일정한 보호 기준과 의무가 설정되어 있는 분야이므로, 이러한 상이한 접근 방식이 국제조약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응용미술은 국제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용어사전에 따르면, 응용미술이란 “수공업품이든 산업적 규모로 생산된 공업적 생산품이든 관계없이, 실용적 목적을 가진 실용물품에 응용된 미술저작물”로 정의된다.¹⁴⁾ 이 정의는 응용미술이 순수미술과 구별되는 실용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임을 명확히 전제하고 있다.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주요 국제조약으로는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이하 ‘베른 협약’), WIPO 저작권 조약(이하 ‘WCT’), 그리고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TRIPS 협정’)이 있다. 이들 조약은 응용미술을 포함한 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방식에 관하여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2.3.1. 베른협약

베른협약은 1908년 베를린 개정안 채택 이후 응용미술작품에 대한 규율을 단계적으로 포함해 왔다. 동 개정안 제2조는 “산업적 목적에 적용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응용미술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이후 1948년 브뤼셀 개정을 거치면서, 응용미술에 대한 규율은 보다 명확한 형태로 정비되었다.

현행 베른협약 제2조 제1항은 보호 대상 저작물의 예시 중 하나로 “응용미술저작물(works of applied art)”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2조 제7항 제1문은 “동맹국은 응용미술저작물 및 산업디자인의 보호 방법과 조건을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제품의 형태나 외관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각국의 국내법과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 즉, 베른협약은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에 관하여 단일하고 통일적인 판단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 각국은 자국의 법체계와 정책적 고려에 따라 그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13) 예컨대, 미국 특허심사절차 매뉴얼(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s)은 ‘디자인은 그것이 적용되는 물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단순한 표면 장식의 도식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a “design is inseparable from the article to which it is applied and cannot exist alone merely as a scheme of surface ornamentation”)’고 규정하고 있다(MPEP § 1502, Definition of a Design)(WIPO, supra note 5, p. 12, footnote 26 재인용).

14) WIPO, “WIPO Glossary of Terms of the Law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WIPO, 1983, p. 9.

아울러 베른협약 제2조 제7항 제2문은 국가별로 상이한 응용미술 보호 체계가 병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본국에서 오로지 디자인으로만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른 동맹국에서도 원칙적으로 그 국가가 디자인에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만, 즉 동일한 수준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해당 동맹국이 디자인에 관한 특별한 보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저작물은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응용미술저작물 및 산업디자인의 보호 범위와 보호 조건을 국내법에 위임하는 한편, 본국에서의 보호 형태가 수입국의 보호 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2조 제7항 제2문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본국에서의 보호 형태를 이유로 동맹국이 해당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이 바로 쿼툼(Kwantum) 사건¹⁵⁾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 판결에서, 베른협약 제2조 제7항이 응용미술 보호에 관한 국가 재량을 인정하는 조항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동 조항 제2문에 규정된 임의적 상호주의 규칙은 EU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EU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는 규범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이 응용미술 작품에 대하여 본국에서의 보호 형태를 이유로 EU 법이 보장하는 저작권 보호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베른 협약 제7조 제4항은 응용미술작품이 예술작품으로 보호되는 경우, 보호기간을 최소한 창작 후 2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보다 장기간의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는 각국의 입법에 맡기고 있다. 1967년 스톡홀름 개정과 1971년 파리 개정을 거쳐 확정된 현행 협약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종합하면, 베른 협약은 응용미술을 문학·예술 저작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보호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구체적인 보호 요건—예컨대 요구되는 예술성 또는 창작성의 수준, 디자인법과의 경계 설정, 보호 방식과 기간—에 대해서는 각 동맹국의 입법 재량에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i) 응용미술은 베른협약상 보호대상에 포함되지만, (ii)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것인지는 각국의 재량으로서 국가별 법제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3.2. WIPO 저작권조약(WCT)

WCT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베른협약의 특별협정’으로서, 보호 대상 저작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베른협약을 그대로 준용한다(제1조).¹⁶⁾ WCT 제3조는 베른협약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mutatis mutandis*)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응용미술 역시 별도의 정의나 독자적인 규율을 두지 않고 베른협약상 ‘문학·예술 저작물’의 범주 내에서 보호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WCT는 응용미술에 대하여 예술성과 산업성의 분리 여부와 같은 추가적인 실질적

15) C-227/23, Kwantum Nederland BV and Kwantum België BV v. Vitra Collections AG, 24 October 2024, ECLI:EU:C:2024:914(미국에서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못했던 미국 디자이너 Charles & Ray Eames가 창작한 가구 디자인이 EU에서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16) WCT 제1조 베른협약과의 관계

(1) 이 조약은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제20조의 의미에서, 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동맹의 회원국인 체약당사국과 관련하여 특별협정에 해당한다. 이 조약은 베른협약 이외의 어떠한 조약과도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며, 다른 조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국들이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따라 상호간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의 의무를 감경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이하에서 “베른협약”이라 함은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1971년 7월 24일 파리 개정협약(Paris Act)을 의미한다.

(4) 체약당사국은 베른협약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부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보호 요건을 새로 설정하지 않으며, 그 보호 범위와 구체적인 보호 방식은 베른협약의 체계 및 각 회원국의 국내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에 맡기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¹⁷⁾

2.3.3. TRIPS 협정

TRIPS 협정은 산업디자인 또는 응용미술 작품과 관련하여 베른협약의 실질적 규정 대부분을 참조 형태로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TRIPS 협정이 베른협약 제1조부터 제21조 및 부속서 제1조를 원용함으로써, 응용미술을 포함한 저작물의 범위와 기본적인 보호 원칙을 베른협약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응용미술에 관한 특유의 규율은 주로 보호기간의 최소 기준에서 확인되며, TRIPS 협정 역시 베른협약과 마찬가지로 사진 및 응용미술에 대하여 최소 25년의 보호기간을 인정하고 있다.¹⁸⁾

한편, TRIPS 협정 제25조 및 제26조는 산업디자인에 대해 일정한 최소보호 기준을 규정하면서, 응용미술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산업디자인 보호의 병존 가능성 및 그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는 각국의 법제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¹⁹⁾ 따라서 TRIPS 체제하에서도 응용미술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베른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저작물성, 즉 창작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저작권법과 디자인법 간의 조화 또는 중복 보호 여부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법제에 따라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²⁰⁾

2.3.4. 정리

베른협약은 응용미술을 포함한 저작물의 보호 범위, 최소 25년의 보호기간, 그리고 디자인 보호 제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2조 제7항 제2문은 회원국 간 응용미술의 보호 체계가 상이한 경우, 본국에서 인정되는 보호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적 상호주의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회원국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WIPO 저작권 조약(WCT)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용, 온라인 전송, 기술적 보호조치 등 새로운 이용 형태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의 체계를 보완·확장하였으나, 응용미술에 관해서는 별도의 실체적 보호 요건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TRIPS 협정은 국제 무역질서의 관점에서 베른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응용미술을 포함함)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에서 구속력 있게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응용미술에 대한 최소 25년의 보호기간 등 핵심적인 최소 기준을 재확인하였다.

이들 국제조약은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각 회원국이 자국의 법제에 따라 보호 방식과 보호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입법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17) Ibid.

18) TRIPS 협정 제12조(보호기간).

19) J.H.H. Weiler et al., "Unit XI: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Jean Monnet Program, <<https://www.jeanmonnetprogram.org/wp-content/uploads/WTO-Unit-11-TRIPS-2016-edition.pdf>>, 검색일: 2026. 2. 26.

20) 이호흥,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교차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35면.

3. 주요국·지역별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

3.1. EU

3.1.1.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은 EU 저작권지침과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통일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EU 저작권 체계의 중심을 이루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²¹⁾은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유형을 열거하지 않고, 전문 12에서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기능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지침은 응용미술을 저작물의 범위에서 배제하지 않으며 그 보호 여부는 형식이나 산업적 성격이 아니라 저작물성 판단에 맡겨진다고 해석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이 창작자의 독자적 지적 창작물(the author's own intellectual creation)이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러한 기준은 2009년의 Infopaq 사건²²⁾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이후 Painer 사건²³⁾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즉, Infopaq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물성의 요건으로서 독창성(originality)을 요구하면서, 여기서의 독창성이란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Painer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저작권 보호 대상은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된 고유의 지적 창작물이어야 하며,²⁴⁾ 저작자의 개성은 저작자가 작품 제작 과정에서 자유롭게 창조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창작 능력을 표현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²⁵⁾

이와 같은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EU에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은 별도의 실체적 요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응용미술이라는 성격이나 산업적·실용적 요소의 존재는 저작물성 판단에서 결정적 기준이 되지 않으며, 해당 표현이 창작자의 자유롭게 창조적인 선택을 반영한 독자적 지적 창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보호 여부가 판단된다.

3.1.2. 판례 법리의 전개: 중첩보호 여부

유럽사법재판소는 Flos 사건²⁶⁾, Cofemel 사건²⁷⁾, Brompton 사건²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21)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OJ L 167, 22.6.2001).

22) C-5/08, Infopaq International v. Danske Dagblades Forening (2009) ECLI:EU:C:2009:465 (미디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체인 Infopaq는 덴마크 신문사들의 발행물을 스캔하여 검색 가능한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고, 언론 기사에서 검색 시스템이 추출한 11개 단어의 텍스트 조각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였다. 여기서 문제 된 것은 11개 단어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자가 단어의 선택, 순서 및 조합을 통해서 독창적인 방식으로 창의성을 표현한 지적창작물일 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즉, 이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독창성(Originality)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독창성이란 ‘저작자 자신의 지적창작물’이어야 한다(“originality must reflect the author's own intellectual creation”)고 판시한 것이다.).

23) C-145/10, Eva Maria Painer v. Standard Verlags (2011), ECLI:EU:C:2011:798 (학교에서 촬영한 초상화 사진이 저작물인지에 대하여 다투어진 사건인데,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한 저작자의 고유의 지적창작물이어야 하고,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하는 것이란 저작자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택’을 통해 작품 제작에 있어 저작자 자신의 창작 능력을 표현한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24) Ibid., para. 88.

25) Ibid., para. 89.

26) C-168/09, Flos SpA v Semeraro Casa e Famiglia SpA, EU:C:2011:29 (이탈리아의 조명기기 디자인을 둘러싸고,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디자인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27) C-683/17, Cofemel - Sociedade de Vestuário SA v G-Star Raw CV, EU:C:2019:721(의류 디자인과 같은 응용미술(산업디자인)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특히 ‘예술적 가치’와 같은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판례를 통하여, 응용미술을 둘러싼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관계를 명확히 해 왔다. Flos 판결에서는 두 제도가 서로 다른 목적과 요건을 지닌 독립적인 보호 체계하에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응용미술 또는 산업디자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창작자의 독자적 지적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²⁹⁾

Cofemel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디자인지침(Design Directive)과 디자인규정(Design Regulation)이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중첩적 보호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응용미술에 대해서도 일반 저작물과 동일한 독창성(originality)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³⁰⁾ 다만, 이러한 동시적 보호(concurrent protection)는 “특정한 경우(certain specific situations)”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응용미술의 특성과 저작권법 및 디자인법의 상이한 기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Cofemel 판결에서는 저작물성 판단의 기준을 ‘저작자의 고유한 지적 창작물(its author’s own intellectual creation)’로 명확히 하였고, 이는 응용미술 저작물(이 사건에서는 의류 디자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을 확인하였다.³¹⁾

이어 Brompton 판결³²⁾에서는 기술적 기능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요소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기술적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창작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영역이 남아 있고, 그러한 선택이 구체적 표현에 반영된 경우에는 독창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용미술에 해당하는 기능성 제품 디자인의 저작물성 판단은 여전히 국내법 적용 단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유형의 디자인에 대하여 상이한 결론이 도출되는 사례도 발생하는데, 바이어켄슈탁(Birkenstock) 샌들 사건이 대표적이다. 원고인 Birkenstock회사는 Arizona, Gizeh 등 대표 모델 샌들의 디자인은 응용미술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최근 독일에서는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으나,³³⁾ 네덜란드에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³⁴⁾ 이러한 상황에서, 응용미술의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보호의 중첩 적용 요건을 재확인한 Mio/Konektra 사건³⁵⁾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2025년 12월 4일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① 응용미술에 대한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보호의 중첩적용 가능성, ②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 ③ 응용미술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이라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다.

먼저 법원은 디자인권과 저작권이 원칙-예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응용미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저작물보다 엄격한 독창성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에 있어서도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독창성만이 기준이 되며, 특정 디자인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보호가 병존하는 중첩적 보호(cumulation)가 허용된다. 응용미술의 독창성 판단은 창작물 자체에 나타난 저작자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이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Cofemel 판결 이전에는 응용미술을 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하여 ‘심미적 표현의 독창적 수준(ästhetische Gestaltungshöhe)’을 요구하였으나, Cofemel 판결 이후

28) C-833/18, SI and Brompton Bicycle Ltd v Get2Get, EU:C:2020:461(접이식 자전거로 유명한 Brompton 자전거의 형태가, 기술적 기능(접힘·폐짐·주행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 것인지, 아니면 창작자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이 반영된 표현인가가 문제된 사건이다.).

29) C-168/09 (Flos), paras. 33-36.

30) C-683/17 (Cofemel), paras. 40-43.

31) C-683/17 (Cofemel), paras. 53-54.

32) C-833/18 (Brompton), paras. 24-27.

33) BGH, Urteil vom 20. Februar 2025 - I ZR 16/24, 각주 1.

34) Rechtbank Midden-Nederland, 12 November 2025, ECLI:NL:RBMNE:2025:5837, 각주 2.

35) C-580/23 and C-795/23 (Mio/Konektra).

‘심미적 표현’은 적용하지 않고 독창성(개성 표현)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일원화하였다. 여전히 추가적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 역시, Mio/Konektra 판결로 인해 관련 입법의 정비를 더 이상 유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응용미술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은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한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이 침해 대상물에서 식별 가능한 형태로 복제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디자인 보호 영역에서 활용되는 ‘전체적 인상 이론’³⁶⁾은 저작권 침해 판단에 적용될 수 없으며, 저작물의 독창성 정도가 높거나 낮다는 사정 역시 보호 범위를 달리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유사한 독립적 창작의 가능성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1.3. 정리

유럽에서는 관련 지침과 판례를 통하여,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은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독창성(originality)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응용미술은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에 의해 중첩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Mio/Konektra 판결은 이러한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중첩적 보호 가능성을 재확인하였다. 요컨대, 유럽에서는 응용미술에 대하여 일반 저작물보다 더 높은 창작성이나 예술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접근을 사실상 배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2. 미국

3.2.1.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현행 미국저작권법 제101조는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은 기계적 또는 실용적 측면이 아닌, 형상에 관한 것으로서 미술공예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술공예품은 기계적 또는 실용적 측면의 기능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에는 미술공예저작물의 물품성과 관련하여 “본조에 의해 정의된 실용물품의 디자인은 회화, 그래픽 및 조각의 특징을 가지고, 그 특징이 물품의 실용적 측면과 분리되어 식별 가능하고,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만,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⁷⁾ ‘실용물품(usable articles)’이란 실용적(utilitarian)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즉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어 단순한 외관 표현이나 정보 전달을 넘어 실용

36) Mio/Konektra 판결에서 C-580/23 사건의 세 번째 질문인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침해 대상물에 원저작물의 창작적 요소가 인식 가능하게 재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아니면 전체적 인상의 유사성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와 네 번째 질문인 “침해 판단에 있어, 저작물의 독창성 정도, 통상적 요소 또는 디자인 경향의 반영 여부, 그리고 독립적 유사 창작의 존재는 보호범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 침해 여부는 두 대상물 사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체적 인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는 저작물의 독창성 정도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가 침해 대상물에 인식 가능하게 재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즉, 침해 판단의 핵심은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한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이 침해 대상물에서 식별 가능한 형태로 복제되었는지에 있으며, 디자인 보호 영역에서 활용되는 ‘전체적 인상 이론’은 저작권 침해 판단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7) 17 U.S.C. §101 “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 include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works of fine, graphic, and applied art, photographs, prints and art reproductions, maps, globes, charts, diagrams, models, and technical drawings, including architectural plans. Such works shall include works of artistic craftsmanship insofar as their form but not their mechanical or utilitarian aspects are concerned; the design of a useful article, as defined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idered a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work only if, and only to the extent that, such design incorporates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features that can be identified separately from, and are capable of existing independently of, the utilitarian aspects of the article.

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³⁸⁾ 예컨대, 의류(옷, 코스튬), 가구(의자), 램프 등은 모두 입는 기능, 앉는 기능, 비추는 기능을 본질적으로 수행한다.

실용물품에 구현된 디자인 또는 응용미술이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물품성 판단과는 별개이다. 저작권법은 ‘표현’만을 보호하며, 기능적 아이디어와 실용성은 보호하지 않는다.

실용물품의 저작물성은 1954년 Mazer v. Stein 사건³⁹⁾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문제되었다. 응용미술이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조각상이 램프 받침(lamp base)으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1909년 저작권법을 확장하여 해석할 경우 램프라는 실용물품과는 별개로 조각상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1976년 개정 저작권법에 명확히 반영되었다.⁴⁰⁾ 개정법은 ‘실용물품’에 대해, 그 미적 요소가 물품의 실용적 기능과 “분리 가능(separable)”하며 물품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⁴¹⁾ 실용물품에 포함된 회화적, 그래픽적, 조형적 요소(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features)가 실용 기능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면 즉,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 저작권법에서 응용미술이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저작물에 적용되는 독창성 외에 분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분리가능성은 물리적 분리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관념적 분리가능성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를 통해 변천을 거듭하다 Star Athletica 사건⁴²⁾에서 ‘분리 가능성(separability)’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정립되었다.

3.2.2. 판례 법리의 전개: 분리가능성

3.2.2.1. 물리적 분리가능성

실용물품에 구현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문제된 Mazer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문제된 조각상이 램프와 결합되어 실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그 조각상 자체는 독립적인 미술작품으로서 램프 본체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각상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에 있어 물리적 분리가능성(physical separability)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고전적 판례로 평가된다.

이후 현대적 디자인의 옥외용 조명기구 전체 형태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Esquire 사건⁴³⁾에서는, 문제의 조명기구 디자인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미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었다. 이 판결은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을 물리적 분리가능성에 엄격히 한정함으로써, Mazer 사건에서 확립된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이해된다.

3.2.2.2. 대체적 관념적 분리가능성

분리가능성(separability) 테스트를 적용한 초기 판례들은 주로 물리적 분리가능성

38) 17 U.S.C. §101, A “useful article” is an article having an intrinsic utilitarian function that is not merely to portray the appearance of the article or to convey information. An article that is normally a part of a useful article is considered a “useful article”.

39) Mazer v. Stein, 347 U.S. 201 (1954).

40)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pyright Law Revision(H.R. Rep. No. 94-147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p. 1-368.

41) 17 U.S.C. §101.

42)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137 S. Ct. 1002 (2017).

43) Esquire, Inc. v. Ringer, 414 F. Supp. 939 (D.D.C. 1976), reversed 591 F.2d 796 (D.C. Cir. 1978).

(physical separability)을 중심으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후 판례 전개 과정에서, 실용물품에 구현된 미적 요소가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념적 분리가능성(conceptual separability) 개념이 점차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장식용 벨트 버클 두 점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Kieselstein-Cord 사건⁴⁴⁾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용물품에 구현된 장식적·미적인 요소가 주된 구성 요소를 이루고 실용적 기능이 부차적인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아, 이른바 주요성/부차성 기준(primary/subsidiary test)을 채택하였다. 즉, 응용미술적 요소가 실용적 기능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거나 이를 사실상 대체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반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저작물성이 부정된 사례로는 Carol Barnhart 사건⁴⁵⁾과 Brandir International 사건⁴⁶⁾을 들 수 있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실용물품에 구현된 응용미술적 요소가 해당 물품의 기능적 측면을 대체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즉, 이 판례들은 응용미술적 요소와 실용적 기능 요소를 대체적 관계로 파악하고, 그러한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⁴⁷⁾

3.2.2.3. 관념적 분리가능성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대체성과 결부시키는 입장에 이어서, 실용적 기능과 예술적 표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하나의 대상에 동시에 인식될 수 있다면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응용미술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파악하던 종래의 대체성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양자를 이중적 관계로 이해하면서 관념적 분리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그 전환점이 된 판례가 Star Athletica 사건⁴⁸⁾이다.

Star Athletica 사건에서는 치어리딩 유니폼에 적용된 2차원적 장식 요소(스트라이프, 웨브론 패턴 등)가 유니폼의 기능적 요소와 분리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용물품에 적용된 디자인 요소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그 요소가 실용적 기능과 구별되는 회화적·그래픽적 또는 조형적 표현일 것, 둘째 그 요소를 실용물품으로부터 상상적으로 제거(imaginatively removing)하여 다른 매체에 적용하였을 때에도 독립된 예술작품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즉, 실용물품의 기능적 측면과 무관하게 관념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예술작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저작물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후 Silvertop Associates 사건⁴⁹⁾은 Star Athletica 판결에서 확립된 기준을 적용하여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을 긍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44) Kieselstein-Cord v. Accessories by Pearl, Inc., 632 F.2d 989 (2d Cir. 1980).

45) Carol Barnhart Inc. v. Economy Cover Corp., 773 F.2d 411 (2d Cir. 1985).

46) Brandir International, Inc. v. Cascade Pacific Lumber Co., 834 F.2d 1142 (2d Cir. 1987).

47) 차상욱,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편), 디자인과 법,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7, 101-102면.

48)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137 S. Ct. 1002 (2017).

49) Silvertop Assocs. Inc. v. Kangaroo Mfg. Inc., 931 F.3d 215 (3d Cir. 2019).

3.2.3. 정리

이와 같이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에 관한 미국 판례의 전개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물리적 분리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보호를 인정하였고, 이후에는 응용미술적 요소가 실용적 기능을 대체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불완전한 관념적 분리가능성 단계로 이행하였다. 이어서 Star Athletica 사건에 이르러서는, 대체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표현이 관념적으로 분리되어 독립된 예술작품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현행 미국법상으로는, 응용미술에 관하여 물리적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저작물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⁵⁰⁾

3.3. 일본

3.3.1.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말하는 미술저작물에는 미술공예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저작물의 예시로서 회화, 판화, 조각 기타 미술저작물을 열거하고 있다.⁵¹⁾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은 미술저작물이 미술공예품을 포함하고 있음을 정한 것으로, 응용미술의 보호범위를 명시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응용미술에 관한 다른 규정도 없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응용미술이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다.⁵²⁾

일본 저작권법상 어떤 표현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독창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해당 표현에 창작자의 개성이 발휘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³⁾ 따라서 표현이 지나치게 평범하거나 흔하여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⁵⁴⁾

이러한 일반 원칙에 따르면, 실용물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서 문예·학술·미술·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법문 해석만으로는 그 보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학설상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⁵⁵⁾ 관련 판례 또한 다수 축적되어 왔다.

50) 차상욱, 앞의 논문(주 47), 101면.

51) 中山信弘, 「저작권법」, 윤선희(역), 법문사, 2008, 122면.

52) 作花文雄, 「詳解著作権法」, 第3版, ぎょうせい, 2006, 135頁.

53) 知財高裁 平成27年4月14日判決, 平成26(ネ)10063号(2015년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유아용 의자 TRIPP TRAPP의 형태에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54) 作花文雄, 앞의 책(주 52), 135頁. 東京地判 昭和56年4月20日判決, 昭和51年(ワ)第10039号.

55) 作花文雄, 앞의 책(주 52), 135頁; 半田正夫·松田政行(編),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ル」, 第2版, 勁草書房, 2015, 567-568頁.

3.3.2. 판례의 전개

3.3.2.1. 순수미술 정도의 고도의 창작성

판례의 흐름을 살펴보면, 2015년 TRIPP TRAPP 지적재산고등법원 판결 이전 일본 법원은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순수미술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미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로 보호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업재산권 제도에 의한 보호에 맡기는 태도를 취해 왔다. 이처럼 응용미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배경에는 디자인 제도와 역할 분담, 특히 디자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실용물품의 미관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경우 산업 활동이 과도하게 제약되어 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⁵⁶⁾

응용미술임에도 불구하고 판례에서 미술저작물성이 긍정된 사례로는, ‘하카다 인형 사건(博多人形事件)’⁵⁷⁾, ‘불단 조각 사건(仏壇彫刻事件)’⁵⁸⁾, ‘티셔츠 도안 사건(Tシャツ図案事件)’⁵⁹⁾, ‘증정 피규어 사건(おまけ用フィギュア事件)’⁶⁰⁾ 등이 있다. 각 사건에서 법원이 미술저작물성을 긍정한 근거를 살펴보면, 하카다 인형 사건에서는 해당 작품이 ‘미술공예적 가치로서의 미술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불단 조각 사건에서는 ‘미적 표현을 미술적으로 감상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고도의 미적 표현을 한 것’이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티셔츠 도안 사건에서는 해당 도안이 ‘순수미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미적 창작물’이며, ‘객관적·외형적으로 오로지 미적 표현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미적 창작물’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증정 피규어 사건에서도 ‘순수미술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미적 창작성의 구비’가 인정되어 미술저작물성이 긍정되었다.

반면, 미술저작물성이 부정된 사례로는 ‘주머니띠 무늬 사건(袋帯図柄事件)’⁶¹⁾, ‘나뭇결 화장지 사건(木目化粧紙事件)’⁶²⁾, ‘퍼비인형 사건(ファービー人形事件)’⁶³⁾, ‘흑오룡차 사건(黒烏龍茶事件)’⁶⁴⁾, ‘츠츠미인형 사건(堤人形事件)’⁶⁵⁾ 등이 있다. 이들 사건에서 법원은, 주머니띠 무늬나 나뭇결 화장지의 경우 실용물품의 문양이라는 점을 떠나 완성된 미술작품으로 감상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미술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또한 퍼비인형 사건에서는 해당 인형이 체내에 각종 센서를 내장하여 자극에 따라 귀나 눈꺼풀이 움직이거나 음성을 내는 기능을 갖춘 장난감이라는 점을 들어, 순수미술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흑오룡차 사건에서도 문제된 용기 디자인은 실용적 요소와 분리된 순수미술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었다. 츠츠미인형 사건에서 법원은, 츠츠미인형이 에도시대부터 제작되어 온 전통공예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상품에 대하여 독자적인 저작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창작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제된 인형은 이러한 수준의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이 TRIPP TRAPP 판결 이전 일본 판례는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을 인정함에 있어, 순수미술과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이에 준하는 고도의 미적 창작성을 요구하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⁶⁶⁾ 상기 판례들이 보여 온 전통적 태도는, 실용적 측면이 강한 경우에

56) 東京地裁 昭和54年3月9日無体集11巻1号114頁(「ヤギ・ボールド」事件).

57) 長崎地佐世保支判 昭和48年2月7日判決、昭和47(ヨ)第53号.

58) 神戸地方裁判所姫路支部 昭和54年7月9日判決、昭和49(ワ)第291号.

59) 東京地裁 昭和56年4月20日判決、昭和51年(ワ)第10039号.

60) 大阪高裁 平成17年7月28日判決、平成16年(ネ)第3893号.

61) 京都地裁 平成元年6月15日判決、昭和60年(ワ)第1737号.

62) 東京高裁 平成3年12月17日判決、平成2年(ネ)第2733号.

63) 仙台高裁 平成14年7月9日判決、平成13年(ウ)第177号.

64) 東京地裁 平成20年12月26日判決、平成19年(ワ)第11899号.

65) 最高裁判所 平成20年9月8日判決、平成19年(行ヒ)第223号.

는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고 디자인법에 의한 보호에 맡기려는 것이었다.

3.3.2.2. 독창성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입장은 2015년 TRIPP TRAPP 사건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⁶⁷⁾ 2015년 TRIPP TRAPP 판결⁶⁸⁾에서 법원은,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순수미술과 동일한 수준의 고도의 미적 창작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창작자의 개성이 발휘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응용미술이 장신구와 같이 실용물품 자체인 경우, 가구에 새겨진 조각과 같이 실용물품과 결합된 경우, 염색 도안과 같이 실용물품의 무늬로 이용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유형과 표현 양상을 가지므로, 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높은 창작성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은 개별 사안별로 창작자의 개성이 발휘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의자의 형태적 특징은 항소인의 개성이 발휘된 “창작적 표현”으로서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관계에 관하여서도, 양 법률은 그 취지와 목적이 상이하며(저작권법 제1조, 디자인법 제1조), 어느 한쪽이 배타적 또는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만든다고 볼 명문 규정이나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응용미술이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물로서의 인정을 특별히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3.3.2.3. 분리가능성과 고도의 창작성

그러나 2015년 TRIPP TRAPP 판결에서 제시된 응용미술 저작물성 기준은 이후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회귀하였다. 2021년 ‘문어 미끄럼틀 사건(タコの滑り台事件)’⁶⁹⁾에서 법원은, 미술공예품이 아닌 실용 목적의 양산품에 대하여 단순히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미술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은, 실용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등에 대해서까지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해당 물품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장래의 창작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적 구성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미적 감상성이 특히 높은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2015년 이전의 엄격한 판단기준으로 회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2024년 ‘타월 무늬 사건(タオル絵事件)’⁷⁰⁾에서도 유지되었다. 법원은, 미술공예품 이외의 실용 목적의 미술 양산품이라 하더라도, 실용 목적에 관한 기능과 분리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미술 감상의 대상이 되는 창작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문어 미끄럼틀 사건의 관점을 명확히 계승한 것이다.

같은 해 선고된 2024년 지식재산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TRIPP TRAPP 사건⁷¹⁾에서도 이러한

66) 橋谷俊, “ファッションショーにおける化粧、髪型のスタイリング、衣装やアクセサリーの選択とコーディネートにつき著作物性を否定した事例(1)”,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Vol.47(2015), 395頁.

67) 森本晃生, “裁判例評釈 いわゆる応用美術の著作物性判断基準につき従前の立場を変更した知財高裁第2部判決”, 『パテント』, Vol.68 No.10(2015), 71頁.

68) 知財高裁 平成27年4月14日判決、平成26(ネ)10063号.

69) 知財高裁 令和3年12月8日判決、令和3年(ネ)第10044号.

70) 東京地裁 令和6年3月28日判決、令和元年(ワ)第30628号.

71) 知財高裁 令和6年9月25日判決、令和5年(ネ)第10111号.

관점은 유지되었는데, 이 판결에서 법원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예·학술·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할 필요가 있으며 실용물품은 미적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감상이 아니라 실용에 있다고 전제하였다. 실용물품의 형상 등에 창작적 표현이 존재하여 시각적 미감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이 아닌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용물품의 형상에 대한 저작물성은, 실용적 기능을 떠나 독립된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이 오로지 미적 감상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의자는 오로지 미적 감상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1심과 달리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2026년 4월 24일 TRIPP TRAPP 사건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⁷²⁾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문제된 의자의 형상은 ‘기능’에 뿌리를 둔 것일 뿐 그로부터 분리되는 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3.3.3. 정리

이와 같이 일본의 응용미술 관련 판례의 흐름을 종합하면, 초기에는 디자인 제도와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우려하여, 응용미술의 범위를 순수미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고도의 미적 창작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왔다. 2015년 TRIPP TRAPP 판결에서는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목적 차이를 강조하며, 응용미술에 창작자의 개성이 발휘된 창작적 표현이 존재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보다 완화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후 문어 미끄럼틀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실용적 기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미술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회귀하였고, 이러한 판례 태도는 타월 무늬 사건 및 TRIPP TRAPP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15년 TRIPP TRAPP 판결을 기준으로 볼 때, 고도의 창작성에 관한 판단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2015년 TRIPP TRAPP 판결 이전에는 순수미술에 준하는 정도의 고도의 창작성이 요구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실용적 기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즉 분리가능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판례의 전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응용미술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적 감상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용적 기능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미술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도의 미적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4. 한국

3.4.1.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1957년에 제정된 구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 다만 동법 제2조는 본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묻지 않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름,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 체계하에서 1957년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미술작품을 회화·조각 등 이른바 순수미술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응용미술작품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다만 산업적 대량생산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

72) 最高裁判所 令和8年4月24日判決、令和7年(受)第356号.

품제작의 공예미술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⁷³⁾

이후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 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작품을 명시적으로 미술 저작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는 응용미술작품 역시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규정은 1995년 개정 저작권법⁷⁴⁾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다만, 1986년 및 1995년 개정 저작권법하에서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해석에 있어 대법원은,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⁷⁵⁾ 즉, ① 응용미술작품이 산업상의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창작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되, ② 예외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도 그 기능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독자적인 예술적 특징과 가치를 갖춘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⁷⁶⁾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종전의 “응용미술작품”이라는 용어를 “응용미술저작물”로 변경하였고, 아울러 제2조 제11호의3(현행 제2조 제15호)에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이 정의 규정은 응용미술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①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을 것(대량생산 가능성), ②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독자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독자성이란, 미술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 미적 표현이 대량생산되는 실용물품에 사용된 경우, 그 표현이 해당 실용물품의 기능적 측면과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을 것, 즉 분리가능성을 갖출 것을 의미한다. 분리가능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은, 해당 실용물품의 기능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미적 표현의 형성에 실질적인 제약 요소로 작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법리는 미국의 분리가능성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⁷⁷⁾

200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 규정이 제2조 제15호로 이동된 점을 제외하면, 응용미술의 보호에 관하여는 2000년 개정법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3.4.2. 판례의 전개

상기와 같은 법률 개정에 따른 규정의 변화는 판례의 전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3.4.2.1. 예술적 특성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 판결된 대한방직 사건⁷⁸⁾에서 대법원은,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전부가 곧바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73)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 제3판, 박영사, 2020, 164면; 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도7572 판결(히딩크넥타이 사건)-”, 법조, 제55권 제9호(2006), 236면.

74) 법률 제5015호 일부개정 1995.12.6. 1996.7.1.시행.

7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대한방직 사건),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생활한복디자인 사건); 김태훈,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저작권」, 제13권 제1호(2000), 7-8면 참조; 윤경, 앞의 논문(주 73), 237-238면 참조; 조원희,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준에 대한 소고”, 「계간저작권」, 제18권 제2호(2005), 18면.

76) 차상욱,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창작과 권리」, 제45호(2006), 83-84면.

77)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140-149면;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 95-96면.

78)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는 응용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대표적인 판례로 평가된다.

또한 ‘생활한복디자인’ 사건⁷⁹⁾에서도 대법원은, 문제된 한복이 본래 일품제작의 미술품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대량생산 및 실용성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 자체가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녀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해당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문제된 한복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 즉 예술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하여 하급심 판결들에서는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이 문제된 봉황무늬의 직물도안 사건⁸⁰⁾, 플라스틱 쟁반의 과일그림 사건⁸¹⁾, 동물 봉제인형 사건⁸²⁾, 그리고 뽀빠이 곰인형 사건⁸³⁾ 등에서 모두 그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⁸⁴⁾

3.4.2.2. 분리가능성

2000년 개정 저작권법 이후에는, 법문에 신설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 규정을 중심으로 저작물성 판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히딩크 넥타이’ 사건⁸⁵⁾에서 법원은, 문제된 넥타이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 문양과 팔괘 문양을 상하좌우로 연속 반복한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해당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이용된 물품인 넥타이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000년 개정 이후 판례는 법문상 정의 규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자전거 보관대’ 사건⁸⁶⁾, ‘애완동물용 개집’ 사건⁸⁷⁾, ‘차량용 방향제’ 사건⁸⁸⁾ 등에서 대량생산 가능성과 물품과의 독자성, 즉 분리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응용미술저작물성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4.3. 정리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은 응용미술작품을 명시적으로 미술저작물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나, 판례(대한방직 사건)⁸⁹⁾는 저작물로서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였다. 즉, 법문상 응용미술작품이 미술저작물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상 저작물성 인정 기준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 개정 저작권법 이후에는, 법조문의 요건에 따라 저작물성을 판단하면 되었기 때문에 판례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 요건은 더 이상 필수적

79)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80) 서울지방법원 1997. 8. 22. 선고 97가합26666 판결.

81) 서울고등법원 1999. 7. 21.자 99라74 결정.

82) 서울지방법원 2000. 8. 18. 선고 99가합72021 판결.

8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5. 25. 선고 2000가합7289 판결.

84) 조원희, 앞의 논문(주 75), 16-17면.

8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일부 디자인 응용미술저작물성 긍정, 일부 디자인 부정).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자 2012가합2882 결정(응용미술저작물성 부정).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1가합511732 판결(응용미술저작물성 부정).

8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인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게 되었다. 대신 법조문상의 요건에 따라 해당 표현이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인식될 수 있는 분리가능성(독자성)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000년 개정법하에서는 응용미술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될 수 있는 독자성을 갖 추기만 한다면, 반드시 고도의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창작성 등 저작물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⁹⁰⁾

결국 2000년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응용미술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저작물의 일반적 성립요건 외에 추가적 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추가 요건의 내용은 ‘예술적 가치’에서 ‘분리가능성’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의 비교법적 분석

4.1. 비교분석을 위한 관점

제3장에서 주요국·지역별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세 가지 관점, 즉 첫째, 기능적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물이 될 수 있는 표현과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기능성과 표현의 경계 설정 방식), 둘째 저작물성 판단기준이 ‘독창성’으로 일원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분리가능성 또는 예술성 등의 추가 요건을 요구하는가(‘저작물’ 개념의 설정), 그리고 세 번째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보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는 세 관점에서 각국 법제가 독자적인 발전을 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은 EU·미국·일본·한국의 법제를 이들 세 가지 관점에 따라 비교한다.

4.2. 기능성과 표현의 경계 설정 방식

EU, 미국, 일본, 한국은 응용미술 보호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유사한 저작권 법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서로 다른 규범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EU는 응용미술을 ‘일반 저작물의 한 표현 유형’으로 파악하는 규범을 형성해 왔다. 저작물성 판단은 오로지 독창성(originality)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응용미술이라는 산업적·실용적 성격은 판단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은 판단요건이 단일하여 당사자가 권리 범위를 사전에 가늠하기 용이하다. 또한 회원국마다 상이했던 ‘응용미술 특칙’(예술성/미적 수준 등)을 배제하여 EU 단일시장에서 규범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산업디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아, 창작적 선택이 반영된 제품디자인에 대해 실효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미국과 한국은 실용물품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 이원적 해석론을 전개한다. 응용미술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창작성을 넘어서 기능으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 요구된다. 즉,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표현’과 보호하지 않는 ‘기능’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려는 시도이다.

일본은 형식적으로는 응용미술을 저작물 범주에서 배제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고도의 미적 창작성을 요구하는 제한적 해석론을 유지하면서, 2015년 TRIPP TRAPP 판결 이후는 ‘표현’과 ‘기능’을 분리하는 분리가능성까지 법원은 추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법 중

90) 윤경, 앞의 논문(주 73), 238면; 진선태, “디자인의 유사성 및 창작성 판단에 관한 프레임워크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1호(2013), 43면.

심의 보호체계를 사실상 우선시키는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

4.3. 저작물 개념의 설정

EU에서는 기능성과 표현의 경계가 없고,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단일 기준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응용미술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에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었는지만을 문제 삼는다. 이로 인해 응용미술에 대하여 추가적 예술성이나 미적 수준을 요구하는 해석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기능적 요소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기능과 결합된 표현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개입된 영역은 보호 대상이 된다. 이는 추가적인 요건을 배제하고, 표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다.

미국과 한국에서도 독창성 자체는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요구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용물품에 구현된 경우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더라도, 기능과 분리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독창성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분리가능성은 미국과 한국에서 응용미술 보호의 핵심 관문으로 기능한다. 미국은 *Star Athletica* 판결을 통해 물리적 분리를 넘어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다. 즉, 실용물품으로부터 상상적으로 제거하여도 독립된 예술작품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보호가 가능하다. 한국 역시 분리가능성을 요건으로 삼고 있으나, 판례는 기능적 제약이 표현 형성에 미친 영향을 비교적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분리가능성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창작성에 관하여 특히 최근 판례는 단순한 개성 발휘나 미적 감상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용 목적과 분리된 미술 감상의 대상이 고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창작성 개념을 순수미술 중심으로 재구성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분리가능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판단 기준이 더 엄격하다.

4.4.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관계

EU는 디자인권과 저작권을 원칙적으로 독립적 보호체계로 이해한다. *Cofemel* 및 *Mio/Konektra* 판결은, 응용미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보호를 제한할 수 없으며, 디자인 보호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 보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중첩적 보호 긍정론).

미국과 한국 역시 제도적으로는 병존을 인정하지만, 분리가능성 요건으로 인해 실제 중첩보호의 범위는 제한된다. 즉, 법리상 병존은 가능하나 실무상으로는 엄격한 관문이 존재한다(조건부 보호론).

일본은 디자인법과 저작권법의 역할 분담을 강하게 의식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용물품의 형상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법에 맡기고, 저작권 보호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태도가 판례 전반에 흐르고 있다.

<표1 주요국·지역별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체계 비교표>

구분	EU	미국	일본	한국
법적 근거	EU정보화사회지침, EU디자인지침, EU디자인규정	17 U.S.C. §101: 실용물품(usable articles) 개념과 미술 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제2항: 미술공예품	저작권법 제2조제15호: 응용미술저작물
디자인권 과의 관계	중첩적 보호	조건부 보호	매우 소극적 중첩보호	조건부 보호
보호요건	독창성(저작자의 독자적 지적 창작물)	독창성 + 분리가능성	고도의 미적 창작성 + 분리가능성	독창성 + 분리가능성
판례흐름	Cofemel(독창성) → Brompton(독창성) → Mio/Konektra(독창성)	Mazer(물리적 분리가능성) → Kieselstein-Cord(대체적 관념 적 분리가능성) → Star Athletica(관념적 분리가 능성)	TRIPP TRAPP(2015) 사건 전(순수미술 정도의 고도 의 창작성) → TRIPP TRAPP(2015) 사건 (독창성) → TRIPP TRAPP(2015) 사건 후(분리가능성+고도의 미 적창작성)	대한방직(예술적 특성) → 히딩크 넥타이(독 창성+분리가능성)

5. 결어: 한국에의 시사점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핵심 쟁점은 응용미술을 ‘특별한 저작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반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가에 있다. 전자는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거나(일본) 저작물성 인정시 추가 요건을 요구하는 입장이고(미국, 한국), 후자는 일반 저작물성의 인정 요건 외에 추가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EU).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접근방식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판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동안 미국이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리가능성(separability)’이라는 추가 요건에 따라 판단해 온 입장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응용미술의 기능적 요소와 미적 표현을 구별한 후, 그 미적 표현이 독립적으로 인식·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해 온 미국의 판례 법리는 그러한 추가 요건 없이 일반 저작물과 동일한 범주에서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Mio/Konektra 판결이 제시한 EU의 기준과 구조적으로 상이하다. 다만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인정하는 최근의 미국 판례의 태도는 EU 기준으로의 접근성을 시사한다. 실용물품으로부터 디자인 요소를 관념적으로 분리하여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므로 기능성과 표현의 경계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EU 기준에 접근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2015년 TRIPP TRAPP 판결에서 일시적으로 EU와 같은 일반저작물의 독창성 기준으로 완화되는 듯했으나, 문어 미끄럼틀 사건을 시작으로 이후 판례들에서 실용 기능과 분리된 고도의 감상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회귀하였다. 이러한 회귀현상은 TRIPP TRAPP 최고 재판소 판결에서 재확인되었다. 미국이 분리가능성이라는 추가적 요건 하에 저작권 보호를 조건부로 인정하는 입장임에 반해 현재의 일본의 판례법리는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여 저작권 보호에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점에서 EU와는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00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도입하면서, 저작물성의 판단 기준이 (일본 판례법리와 같이) ‘예술성’처럼 가치평가적 요소에서 (미국의 판례법리와 같이) ‘분리가능’이라는 구조적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법문상 ‘독자성(분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

므로 미국형 경계설정 모델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응용미술의 산업적 성격을 이유로 보호를 일률 배제하기보다는 기능과 구별되는 미적 표현이 있는지에 따라 보호를 열어두는 방식으로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법은 (미국법과 마찬가지로) 기능과 표현의 경계를 통해 산업적 자유와 창작 보호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리가능성 판단의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분리가능성(독자성)’의 판단기준은 미국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분리가능성뿐만 아니라 관념적 분리가능성까지도 인정하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관념적 분리가능성을 인정한다면 하더라도 실용물품의 기능적 측면과 관념적으로 분리된 디자인 요소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남는다.

미국법에서는 그 디자인 요소가 회화적·그래픽적 또는 조형적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독립된 예술작품’인지를 판단한다. 이때 그 판단이 (일본이 판례법리와 같이) 예술작품으로서의 고도의 미적 창작성이나 감상성까지 요구하는 것인지, (EU의 판례법리와 같이) 일반 저작물과 동일한 범주의 독창성 요구에 머무는 것인지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법의 해석에서 일본 판례법리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경우 예술적 특성 및 가치라는 구저작권법(2000년 이전의 저작권법)의 기준이 부활할 것이라는 점에서 저작권법 개정의 이념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적으로는 미국법과 같은 보호체계라는 점을 고려하되 최근의 EU의 비교법적인 동향을 참고하여 균형잡힌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응용미술 산업의 글로벌 무역의 관점에서는 주요국·지역에서의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 요건의 차이를 고려한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국내 및 동양)

-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 제3판, 박영사, 2020.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차상욱,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편), 디자인과 법,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7.
半田正夫·松田政行(編),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ル1」, 第2版, 勁草書房, 2015.
作花文雄, 「詳解著作権法」, 第3版, ぎょうせい, 2006.
中山信弘, 「저작권법」, 윤선희(역), 법문사, 2008.

단행본(서양)

- André Lucas, *Traité de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5e éd., LexisNexis, 2017.

학술지(국내 및 동양)

- 김종균, “디자인심사관행과 열린디자인심사”, 「지식재산연구」, 제20권 제4호(2025).
김태훈,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저작권」, 제13권 제1호(2000).
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도7572 판결(히딩크넥타이 사건)-”, 법조, 제55권 제9호(2006).
조원희,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준에 대한 소고”, 「계간저작권」, 제18권 제2호(2005).
진선태, “디자인의 유사성 및 창작성 판단에 관한 프레임워크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1호(2013).
차상욱,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창작과 권리」, 제45호(2006).
橋谷俊, “ファッションショーにおける化粧、髪型のスタイリング、衣装やアクセサリーの選択とコーディネートにつき著作物性を否定した事例(1)”,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 Vol.47(2015).
森本晃生, “裁判例評釈 いわゆる応用美術の著作物性判断基準につき従前の立場を変更した知財高裁第2部判決”, 「パテント」, Vol.68 No.10(2015).

판례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7. 21.자 99라74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자 2012카합2882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1가합511732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8. 22. 선고 97가합26666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8. 18. 선고 99가합72021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5. 25. 선고 2000가합7289 판결.
특허법원 2008. 10. 8. 선고 2008허8419 판결.
京都地裁 平成元年6月15日判決、昭和60年(ワ)第1737号.
大阪高判 平成17年7月28日判決、平成16年(ネ)第3893号.
東京高判 平成3年12月17日判決、平成2年(ネ)第2733号.
東京地方裁判所 令和6年3月28日判決、令和元年(ワ)第30628号.
東京地裁 平成20年12月26日判決、平成19年(ワ)第11899号.

東京地判 昭和56年4月20日判決、昭和51年(ワ)第10039号.
 東京地判昭和54年3月9日無体集11巻1号114頁(「ヤギ・ボード」事件).
 仙台高判平成14年7月9日判決、平成13年(う)第177号.
 神戸地方裁判所姫路支部 昭和54年7月9日判決、昭和49(ワ)第291号.
 長崎地佐世保支判 昭和48年2月7日判決、昭和47(ヨ)第53号.
 知財高裁 令和6年9月25日判決、令和5年(ネ)第10111号.
 知財高裁 令和3年12月8日判決、令和3年(ネ)第10044号.
 知財高裁 平成27年4月14日判決、平成26(ネ)10063号.
 最高裁判所 平成20年9月8日判決、平成19年(行ヒ)第223号.
 最高裁判所 令和8年4月24日判決、令和7年(受)第356号.
 Brandir International, Inc. v. Cascade Pacific Lumber Co., 834 F.2d 1142 (2d Cir. 1987).
 Bundesgerichtshof (BGH), Urteil vom 20. Februar 2025 – I ZR 16/24, Birkenstock-Sandalen (kein Werk der angewandten Kunst nach § 2 Abs. 1 Nr. 4 UrhG).
 C-5/08, Infopaq International v. Danske Dagblades Forening (2009) ECLI:EU:C:2009:465.
 C-145/10, Eva Maria Painer v. Standard Verlags (2011), ECLI:EU:C:2011:798.
 C-168/09, Flos SpA v Semeraro Casa e Famiglia SpA, EU:C:2011:29.
 C-227/23, Kwantum Nederland BV and Kwantum België BV v. Vitra Collections AG, 24 October 2024, ECLI:EU:C:2024:914.
 C-580/23 and C-795/23, Mio/Konektra, Judgment of 4 December 2025 (CJEU).
 C-683/17, Cofemel – Sociedade de Vestuário SA v G-Star Raw CV, EU:C:2019:721.
 C-833/18, SI and Brompton Bicycle Ltd v Get2Get, EU:C:2020:461.
 Carol Barnhart Inc. v. Economy Cover Corp., 773 F.2d 411 (2d Cir. 1985).
 Esquire, Inc. v. Ringer, 414 F. Supp. 939 (D.D.C. 1976), reversed 591 F.2d 796 (D.C. Cir. 1978).
 Kieselstein-Cord v. Accessories by Pearl, Inc., 632 F.2d 989 (2d Cir. 1980).
 Mazer v. Stein, 347 U.S. 201 (1954).
 Rechtbank Midden-Nederland, 12 November 2025, ECLI:NL:RBMNE:2025:5837 – Birkenstock v Scapino (auteursrechtelijke bescherming van de sandalen Madrid, Arizona, Florida).
 Silvertop Assocs. Inc. v. Kangaroo Mfg. Inc., 931 F.3d 215 (3d Cir. 2019).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137 S. Ct. 1002 (2017).

인터넷 자료

J.H.H. Weiler et al., “Unit XI: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Jean Monnet Program, <<https://www.jeanmonnetprogram.org/wp-content/uploads/WTO-Unit-11-TRIPS-2016-editon.pdf>>, 검색일: 2026. 2. 26.

연구보고서

이호흥, “저작권법과 디자인법의 교차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07.

기타 자료

김경숙, “CJEU, Mio/Konektra 판결에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요건 판단: C-580/23 및 C-795/23”, 저작권 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pyright Law Revision(H.R. Rep. No. 94-147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WIPO, “Industrial Designs and Their Relation with Works of Applied Art and Three-Dimensional Marks (SCT/9/6)”, WIPO, 2002.

WIPO, “Model Law for Developing Countries on Industrial Designs (Publication No. 808(E))”, WIPO, 1970.

WIPO, “WIPO Glossary of Terms of the Law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WIPO, 1983.